

칸서스허베스트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여 법 제 229 조제 1 호에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법 제 229 조제 2 호 및 같은 조 제 3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금전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가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규약변경(2022.08.31)

제 3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칸서스허베스트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이라 한다. 규약변경(2022.08.31)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6. 모자형 규약변경(2022.08.31)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에 관계없음
2. Class Ae 수익증권 : 온라인 가입자
3. Class I 수익증권 : 납입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4. Class I2 수익증권 : 납입금액 30억원 이상인 경우
5. Class C 수익증권 : 납입금액에 관계없음
6. Class Ce 수익증권 : 온라인 가입자
7. Class P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8. Class P1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 18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38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9. Class Pe 수익증권 : 퇴직연금 온라인 가입자
10. Class Pte 수익증권 : 개인연금 온라인 가입자
11. Class 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일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매입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를 판매회사로 하는 투자자. 이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12. Class AG 수익증권 : IFA(독립투자자문업자) 및 FA의 자문을 받거나 판매회사의 권유없이 직접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자
13. Class A-1 수익증권/Class A-2 수익증권/Class A-3 수익증권/Class A-4 수익증권 : 제 26-1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규약변경(2022.08.31)
14. Class I-1 수익증권/Class I-2 수익증권/Class I-3 수익증권/Class I-4 수익증권 : 제 26-1 조제 1 항제 5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규약변경(2022.08.31)
15. Class I2-1 수익증권/Class I2-2 수익증권/Class I2-3 수익증권/Class I2-4 수익증권 : 제 26-1 조제 1 항제 5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규약변경(2022.08.31)
16. Class C-1 수익증권/Class C-2 수익증권/Class C-3 수익증권/Class C-4 수익증권 : 제 26-1 조제 1 항제 9 호부터 제 12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규약변경(2022.08.31)
17. Class F 수익증권 : 가.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나.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및 일반계정,
다. 최초납입금액이 50 억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칸서스하베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규약변경(신설 2022.08.31)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 4 항 각호 이외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규약변경(신설 2022.08.31)

제 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및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신탁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 및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행위 또는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는 약정에 의한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 5 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 ①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 총좌수는 10 조좌로 한다.

제 7 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신탁금의 납입)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 6 조의 신탁원본의 가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과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과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 2 장 수익증권 등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규약반경(2022.08.31)

1. Class A 수익증권
2. Class A-1 수익증권
3. Class A-2 수익증권
4. Class A-3 수익증권

5. Class A-4 수익증권
6. Class Ae 수익증권
7. Class I 수익증권
8. Class I-1 수익증권
9. Class I-2 수익증권
10. Class I-3 수익증권
11. Class I-4 수익증권
12. Class I2 수익증권
13. Class I2-1 수익증권
14. Class I2-2 수익증권
15. Class I2-3 수익증권
16. Class I2-4 수익증권
17. Class C 수익증권
18. Class C-1 수익증권
19. Class C-2 수익증권
20. Class C-3 수익증권
21. Class C-4수익증권
22. Class Ce 수익증권
23. Class P 수익증권
24. Class P1 수익증권
25. Class Pe 수익증권
26. Class P1e 수익증권
27. Class W수익증권



- 28. Class AG 수익증권
- 29. Class F 수익증권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 2 조제 3 호기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법시행규칙 제 30 조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법시행규칙 제 30 조에서 정하는 사항

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제 1 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1 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집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1 조에 따른 집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12 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집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집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제 4 항의 일정한 날의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⑥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집합투자업자가 제 3 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 354 조제 4 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 3 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 13 조(자산운용지시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4. 법 제 251 조제 4 항에 따른 대출
 5.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증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 5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법 시행규칙 제 9 조 및 제 10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14 조(투자목적)

①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약변경(2022.08.31)

제 15 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 3 조 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규약변경(2022.08.31)
2. (삭제) 규약변경(2022.08.31)
3. (삭제) 규약변경(2022.08.31)
4. (삭제) 규약변경(2022.08.31)
5. (삭제) 규약변경(2022.08.31)
6. (삭제) 규약변경(2022.08.31)
7. (삭제) 규약변경(2022.08.31)
8. (삭제) 규약변경(2022.08.31)
9.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 345 조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제 16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규약변경(2022.08.31)

2. 제15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이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두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약변경(2022.08.31)

- 3. (삭제)규약변경(2022.08.31)
- 4. (삭제)규약변경(2022.08.31)
- 5. (삭제)규약변경(2022.08.31)
- 6. (삭제)규약변경(2022.08.31)
- 7. (삭제)규약변경(2022.08.31)
- 8. (삭제)규약변경(2022.08.31)

제 17 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를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삭제)규약변경 22.08.31
- 3. (삭제)규약변경 22.08.31
- 4. (삭제)규약변경 22.08.31
- 5. (삭제)규약변경 22.08.31
- 6. (삭제)규약변경 22.08.31



- 7. (삭제)규약변경 22.08.31
- 8. (삭제)규약변경 22.08.31
- 9. (삭제)규약변경 22.08.31

제 18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 제 1 호부터 제 2 호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약변경(2022.08.31)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6 조제 1 호부터 제 2 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규약변경(2022.08.31)

- ②(삭제)규약변경 22.08.31
- ③(삭제)규약변경 22.08.31

제 4 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19 조(신탁업자의 신탁주의의무)

신탁업자는 신탁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20 조(신탁업자의 임무제한 등)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제 3 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 269 조제 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법시행령 제 269 조제 2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법시행령 제 269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 88 조제 1 항·제 2 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 93 조제 2 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 238 조제 6 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69 조제 4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 4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22 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에서는 아니 된다.

②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증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68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80 조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 증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 ⑥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 269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



③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및 법령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 28조제 2항을 준용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조제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 28조제 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제 23 조의 1(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규약변경(신설 2022.08.31)

제 24 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법시행령 제 253조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이 항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 2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24 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약변경(신설 2022.08.31)

제 25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 2조제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제 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판매회사(제 24조제 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투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범위에서 투자신탁재산상으로 소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에서 소유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규약변경(2022.08.31)

제 26 조(환매연기)

①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 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5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규약변경(2022.08.31)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법시행령 제 257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법시행령 제 257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시행령 제 258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 1 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 5 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 354 조제 1 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 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6-1조(수익증권의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A, Class 1, Class 12, Class C 수익증권에 한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Class A-1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2. Class A-1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Class A-2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3. Class A-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Class A-3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4. Class A-3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Class A-4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5. Class 1(Class 12)수익증권 보유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Class 1-1(Class 12-1)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6. Class 1-1(Class 12-1)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Class 1-2(Class 12-2)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7. Class 1-2(Class 12-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Class 1-3(Class 12-3)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8. Class 1-3(Class 12-3)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Class 1-4(Class 12-4)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9. Class C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1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10.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11.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3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12.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4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규약변경(2022.08.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Class Ae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P 수익증권, Class P1 수익증권, Class Pe 수익증권, Class P1e 수익증권, Class W 수익증권, Class AG 수익증권, Class F 수익증권은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한다. 규약변경(2022.08.31)

제 6 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 27 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 260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 26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61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 238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28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27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 2 항에 따른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의 공고개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

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개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와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개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와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 규약변경(2022.08.31)

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④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9 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 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30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법 제 88 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 264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③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1 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32 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남입이 원료된 때에 제 10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 33 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규약변경(2022.08.31)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4 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 31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7 장 수익자총회

제 35 조(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규약변경(2022.08.31)

② 수익자총회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같은 조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인자(제 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인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 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6항 및 제 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⑩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4항, 제 6항, 제 8항 및 제 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⑪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인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규약변경(2022.08.31)

제 36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인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제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 188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조제 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제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인자는 제 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집합투자인자는 제 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 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 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 37 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인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인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인자가 취득하는 신탁인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1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인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인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예외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연, 1/1000)

No.	클래스 (Class)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판매회사 보수율	신탁업자 보수율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1	A		9.00		
2	A-1		8.00		
3	A-2		7.00		
4	A-3		5.00		
5	A-4		3.00		
6	Ae		2.00		
7	I		9.00		
8	I-1		8.00		
9	I-2		7.00		
10	I-3		6.00		
11	I-4		5.00		
12	I2		3.00		
13	I2-1	6.54	2.50	0.30	0.16
14	I2-2		2.00		
15	I2-3		1.50		
16	I2-4		1.00		
17	C		15.00		
18	C1		13.75		
19	C2		12.50		
20	C3		11.25		
21	C4		10.00		
22	Ce		7.50		
23	P(퇴직)		13.00		
24	P1(개인)		13.50		
25	Pe(온라인)		6.50		

26	P1e(온라인)	6.75
27	W	0.00
28	AG	5.00
29	F	0.30

규약변경(2022.08.31)

제 38 조(선취판매수수료)

- ①판매회사는 Class A 수익증권, Class AG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2 범위 이내에서 클래스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 이내
2. Class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0% 이내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Class A-1 수익증권, Class A-2 수익증권, Class A-3 수익증권, Class A-4 수익증권, Class Ae 수익증권, Class I 수익증권, Class I-1 수익증권, Class I-2 수익증권, Class I-3 수익증권, Class I-4 수익증권, Class I2 수익증권, Class I2-1 수익증권, Class I2-2 수익증권, Class I2-3 수익증권, Class I2-4 수익증권, Class C 수익증권, Class C-1 수익증권, Class C-2 수익증권, Class C-3 수익증권, Class C-4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P 수익증권, Class P1 수익증권, Class Pe 수익증권, Class P1e 수익증권, Class W 수익증권, Class F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규약변경(2022.08.31)

제38-1조(후취판매수수료)

- ①판매회사는 Class I 수익증권, Class I2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규약변경(2022.08.31)
- ②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2 범위 이내에서 클래스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

1. Class I 수익증권 : 보유기간이 90 일 미만인 경우 환매금액의 0.2% 이내

2. Class 12 수익증권 : 보유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환매금액의 0.1% 이내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Class A 수익증권, Class A-1 수익증권, Class A-2 수익증권, Class A-3 수익증권, Class A-4 수익증권, Class Ae 수익증권, Class 1-1 수익증권, Class 1-2 수익증권, Class 1-3 수익증권, Class 1-4 수익증권, Class 12-1 수익증권, Class 12-2 수익증권, Class 12-3 수익증권, Class 12-4 수익증권, Class C 수익증권, Class C-1 수익증권, Class C-2 수익증권, Class C-3 수익증권, Class C-4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P 수익증권, Class P1 수익증권, Class Pe 수익증권, Class Pte 수익증권, Class W 수익증권, Class AG 수익증권, Class F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규약변경(2022.08.31)

제 39 조(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40 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 1 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2. 특정 종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비용

제 9 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41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35 조제 6 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 42 조 제 3 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 1 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이 신탁계약서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④수익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 개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 38-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약변경(2022.08.31)



제 42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같은 조 같은 항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③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 184 조제 4 항,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같은 조 같은 항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7 조와는 별도로 제 5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⑤ 제 4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대상금액: 제 37 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률자문료 등)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1 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43 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출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별 제 6조제 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간접간 거래를 제외한다)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38-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취판매수 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제 1항제 3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 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 1항제 3호 및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4 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43조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제 1항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시행령 제 87 조제 1항제 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87 조제 1항제 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 10 장 보칙

제 45 조(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별 제 193 조제 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간접간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46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계상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상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항제 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7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상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상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 24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 36 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간접간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제 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상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 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법시행령 제 83 조제 1항 및 같은 조 제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어(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8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고,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에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사항

가.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지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입의 양도·양수

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 시행령 제 262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개시한 경우에 한한다)

라.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마.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바.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 2 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두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크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 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70 조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 3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규약변경(2022.08.31)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에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 3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9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9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 239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의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제 49 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법 제 64조제 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50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 51 조(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2 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원거래법 제 3조제 1항제 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05.03)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10.25)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존수익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 28-1조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에 제 3조제 3항제 4호의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제 28-1조제 1항제 9호부터 제 12호까지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 28조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 1항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제 3조제 3항제 4호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부 칙(개정 2011.09.02)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1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08.17)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0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09)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2.08)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06.10)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07.30)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7.18)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7.23)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9.25)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11.24)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08.31)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SK증권빌딩 10층
컨시어스자산운용주식회사
220-86-84345
대표이사 김연수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박성호

